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8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김성환·김정호·박홍배

오세희 • 전재수 • 이기헌

송재봉 • 박정현 • 이수진

진성준 • 민형배 • 이소영

차지호 • 박지혜 • 이재관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,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,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,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.

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

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10조 및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할 목적으로 기기 및 설비의 제작에 직접 착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작에 착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의 제 작에 착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착수하게 한 때 다만. 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건설허가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건설허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할 목적으로 기기 및 설비의 제작에 직접 착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작에 착
① (생 략) 제17조(건설허가의 취소 등)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	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제17조(건설허가의 취소 등) ①

4. ~ 8. (생략)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단선신설>

③ • ④ (생 략)

비의 제작에 착수하거나 제3
자로 하여금 착수하게 한 때
4. ~ 8. (현행과 같음)
②
<u>다만, 제1항</u>
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
제외한다.
③・④ (현행과 같음)